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조치의무 등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 기준 개선(안 제59조)

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등 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제63조의2, 제171조 및 별표 4)

다. 병역감면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류 명확화(안 제136조)

라.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 포함(안 제145조)

마. 국외여행허가 간주 요건 강화(안 제149조)

바. 병역명문가 선정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8조의3)

사.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화 및 처리 근거 마련(안 제162조)

아.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안 제163조의4, 제163조의5, 제163조의6, 제163조의7 및 제163조의8)

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근거 명확화(안 제16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바목 중 “이내”를 “이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실조사 등)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의 사실 일치 여부
2. 신고내용의 당사자 이외에 해당 복무기관 직원, 동료 사회복무요원 등 관련자에 대해 사실조사
3. 그 밖에 신고내용 사실 여부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조사 해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신고 접수내용 등을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마친 지방병무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 중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을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한다.

제145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85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에”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의3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162조 및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2항에 따라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2.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에 관한 방법을 문의하거나 안내를 목적으로

연락수단 등을 제시하는 정보

3.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의 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의 정보 삭제를 요청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게시·유통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은 3대 모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이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을 포함한다.

2.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

사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위 각 호에 준하여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경우로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군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군 복무 중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포함)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위 각 호에 준하여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제163조의5(병역명문가 선정) ① 병역명문가 선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
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영 제1
63조의4에 따른 선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병역명문가로 선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병역명문가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세
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3조의6(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①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중 영 제1
63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확인되는 경우에

는 병역명문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중 선정 취소대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무이탈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3조의7(병역명문가 포상 등) ① 병역명문가 포상 대상은 병역이행자 수, 병역이행 귀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포상 훈격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방부장관표창, 병무청장표창 및 그 밖의 유관기관장 표창으로 한다.

② 병역명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상금, 병역명문가 패·증서 및 대통령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3조의8(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①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 및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및 포상 등을 위하여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2029년 5월 1일까지 존속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기피한”을 “기피하거나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으로 한다.

제171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9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제2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사회복지요원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법 제95 조제2항			
1) 한 사람에게 수차례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		500	1,000	1,000
2) 그 밖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00	1,000	1,000

별표 4 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실조사를 하 지 않는 등 법 제31조의6을 위반한 경우	법 제95 조제3항			
1) 법 제31조의6제2항, 제7항, 제9항을 위반 한 경우	제1호	300	500	500
2) 법 제31조의6제5항, 제6항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별표 4 제2호마목(종전의 다목)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바목(종전의

라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5조제2항”을 각각 “법 제95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5조제3항”을 “법 제95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58조의3, 제162조, 제163조의4, 제163조의5, 제163조의6, 제163조의7, 제163조의8, 제171조 및 별표 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원휴가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 일 <u>이내</u>	바. ----- - <u>이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 5일 이내)</u>
사. ~ 자. (생 략)	사. ~ 자.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63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 생 시 사실조사 등) ① 복무기관 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u> <u>②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 무청장은 법 제31조의6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신고내용의 사실 일치 여부</u> <u>2. 신고내용의 당사자 이외에 해당 복무기관 직원, 동료 사회복무요원 등 관련자에 대해 사실조사</u> <u>3. 그 밖에 신고내용 사실 여부 파악에 필요한 사항</u> <u>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④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조사 해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신고 접수내용 등을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마친 지방병무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u>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군	① -----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

----- 아동양육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공동
생활가정 또는 학대피해아
동쉼터-----
- 마. · 바.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85조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u>
⑤ (생략)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u>국외에</u>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u>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u>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

1. ~ 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
명문가 선정 등

제162조(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2항에 따라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에 관
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2.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에 관
한 방법을 문의하거나 안내를
목적으로 연락수단 등을 제시
하는 정보

3.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을 실
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
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의 정보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병역의무 기

<신 설>

피·감면 등 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의 정보 삭제를 요청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게시·유통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은 3대 모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이나 전상

· 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을
포함한다.

2.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위 각 호
에 준하여 현역복무 등을 성
실히 마친 경우로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
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
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
2,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
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
람

3. 「군형법」 제30조에 해당하
는 사람 또는 군 복무 중 위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집행유예 포함)받은 사실
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위 각 호

<신 설>

에 준하여 현역복무 등을 성
실히 마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제163조의5(병역명문가 선정) ①

병역명문가 선정을 희망하는 사
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
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영 제163조의4에 따른 선정요건
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병역
명문가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병역명문가 선정 절차 등에 필
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163조의6(병역명문가 선정 취

소) ①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중 영 제163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중
선정 취소대상 등을 확인하기

<신 설>

<신 설>

위해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무 이탈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3조의7(병역명문가 포상 등)

① 병역명문가 포상 대상은 병역이행자 수, 병역이행 귀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포상 훈격은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방부장관표창, 병무청장표창 및 그 밖의 유관기관장 표창으로 한다.

② 병역명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상금, 병역명문가 패 · 증서 및 대통령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3조의8(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①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 및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및 포상 등을 위하여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③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④ <u>위원회는 2029년 5월 1일까지 존속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u>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u>기피한</u>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 ----- ----- ----- ----- ----- <u>기피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u> ----- -----. -----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② ~ ⑧ (생략)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u>제4항</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2677